



2024-07-31

(24-5459)

페이지: 1/2

무역기술장벽위원회

원문: 영어

통보

본 통보문은 10.6 조항에 따라 회람한다.

1. **통보국가:** 일본

해당되는 경우, 관련 지방정부의 명칭(제 3.2 조 및 제 7.2 조):

2. **담당기관:**

경제산업성 (METI)

통보에 관한 의견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기관 또는 당국이 위와 다른 경우, 해당 기관의 이름 및 주소(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이메일 및 가능한 경우 웹사이트 주소 포함)를 명시해야 한다:

3. **근거 조항** 제 2.9.2 조 [X], 제 2.10.1 조 [], 제 5.6.2 조 [], 제 5.7.1 조 [], 제 3.2 조 [], 제 7.2 조 [], 기타:

4. **해당 제품(해당되는 경우 HS 또는 CCCN, 이와 다른 경우 국가 관세 분류 번호. 해당되는 경우 ICS 번호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음):** · 드릴링 머신

· 화약 저장 시설

5. **통보된 문서의 제목, 페이지 수 및 언어:** CO2 저장용 탐사 시추 현장 시설에 대한 기술 표준을 규정하는 장관령; (1 페이지, 영어)

6. **내용:** 이산화탄소저장사업법은 저장 사업자가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을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 기술 표준을 준수하여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광산안전법에서 정한 표준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저장사업법에 근거하여 이산화탄소 저장용 탐사 시추 현장 시설에 대한 기술 표준을 규정하는 장관령을 제정한다.

7. **목적 및 근거(해당되는 경우 긴급한 문제의 성격 포함):**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 보호

8. **관련 문서:**

· 광산에서 사용되는 구조물에 대한 기술 표준을 규정하는 장관령(2004년 경제산업성령 제 97 호)(일본어로만 제공);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16M60000400097>

- 가스 시설에 대한 기술 표준을 규정하는 장관령(2000년 경제산업성령 제 101호)(일본어로만 제공);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12M50000400111>

- 일반 고압 가스에 대한 안전 규정(1966년 경제산업성령 제 53호)(일본어로만 제공);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41M50000400053>

- 폭발물 관리법 시행 규정(1950년 경제산업성령 제 88호)(일본어로만 제공);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25M50000400088>

9. 채택 예정일: 2024-10-18

시행 예정일: 2024-11-01

10. 의견 마감일: 통보일로부터 60일

11. 관련 텍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출처: 국가 질의처 [X] 또는 다른 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경우, 해당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이메일 및 웹사이트 주소:

국제통상과

경제국

외무성

2-2-1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8919, Japan

전화: + (81) 3 5501 8344

팩스: + (81) 3 5501 8343

이메일: enquiry@mofa.go.jp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4/TBT/JPN/24_04931_00_e.pdf